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의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면적기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고시 제 호
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
일부개정고시안
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 증) ①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 구하고 규칙 별표5 제1호에 따 른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 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를 부과한다.		제9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 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적용 대상 :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·나. (생 략) 다. <u>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</u> <u>규칙 별표5 제4호바목에</u> <u>따른 세대원수별 공급면적</u> <u>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</u> <u>거주를 희망하는 자</u>		1.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		
2. 부과 방법 가.·나. (생 략) 다. <u>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</u> <u>람 : 제4조 및 제5조에 따</u> <u>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</u> <u>준임대료에 제3호나목에</u> <u>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</u> <u>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</u> <u>대료로 부과</u>		2.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		

3. 할증 비율 가. (생 략) 나. <u>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</u> <u>과정도에 따른 할증 비율</u> ② (생 략)	3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